

보도 일시	2022. 9. 18.(일) 12:00 2022. 9. 19.(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9. 18.(일)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157)
		담당자	주무관 이상영 (044-202-7148)

## '22.9.19.(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신청 접수 -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 명 확대분 배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9일(월)부터 같은 달 29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 업종별: 제조(6,800명), 농축산업(1,230명), 어업(610명), 건설업(360명), 탄력배정분(1,000명)

< 최근 연도별 외국인력(E-9) 쿼터 및 국내체류 인원 현황 >



이는 '22.8.31.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9월 초부터 이번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 등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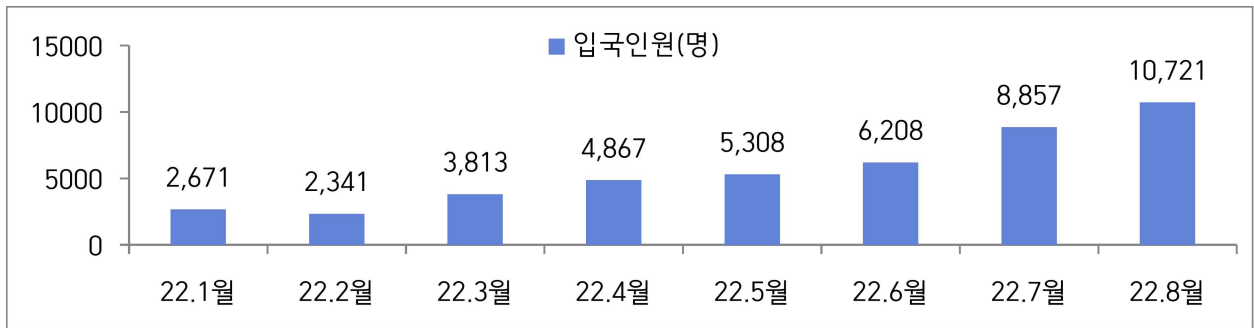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지난 '22.8.3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된다.

[ 업종별 제도개선 사항 ]

-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 총 고용한도인원이 20~25% 상향(규모별 차등)되고,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2명 상향(붙임 참조)
  -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사기간(6개월) 판단 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타 건설현장의 잔여 공사기간 합산 적용
  - **제조업:**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특례\* 확대 적용
- \* 일정기간 동일 사업장(업종)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경우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6→1개월) 및 한국어 시험 면제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근로자(E-9) 월별 입국 현황>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백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 제한('22.12월 시행 예정), ▲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23.2월 시행 예정)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 1 제조업 · 광업

개편 전			개 편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 허용인원	신규 발급 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 허용인원	신규 발급 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4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5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6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6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7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301명 이상	40명	

### 2 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 발급한도	
	개편 전	개편	개편 전	개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총 고용	개편 전	3명	5명	7명
		허용인원	개편	5명	7명	
		신규 발급한도	개편 전	2명	3명	4명
			개편	3명	4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혼합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양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 3 농축산업

업 종	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 ~ 6,499	6,500 ~ 11,499	11,500 ~ 16,499	16,500 ~ 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 ~ 1,699	1,700 ~ 3,099	3,100 ~ 4,499	4,500 ~ 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 ~ 39,999	40,000 ~ 79,999	80,000 ~ 119,999	120,000 ~ 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 ~ 29,999	30,000 ~ 49,999	50,000 ~ 69,999	70,000 ~ 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 ~ 349	350 ~ 649	650 ~ 949	950 ~ 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 ~ 19,499	19,500 ~ 34,499	34,500 ~ 49,499	49,500 ~ 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 ~ 2,399	2,400 ~ 4,399	4,400 ~ 6,399	6,400 ~ 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 ~ 4,999	5,000 ~ 8,999	9,000 ~ 12,999	13,000 ~ 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 ~ 1,999	2,000 ~ 3,999	4,000 ~ 5,999	6,000 ~ 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 ~ 499	500 ~ 999	1,000 ~ 1,499	1,500 ~ 1,999	2,000 이상
	양계	2,000 ~ 3,499	3,500 ~ 6,499	6,500 ~ 9,499	9,500 ~ 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 ~ 1,699	1,700 ~ 3,699	3,700 ~ 5,699	5,700 ~ 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총 고용허용 인원	개편 전	5명	8명	10명	15명	20명
	개편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신규 발급한도	개편 전	2명	2명	3명	3명	4명
	개편	4명				
비고	개편 전	※ 젖소 900 ~ 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 ~ 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 ~ 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2명 인정 ※ 양계 1,000 ~ 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양돈 500 ~ 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개편	※ 젖소 900 ~ 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한육우 1,500 ~ 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 ~ 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4명 인정 ※ 양계 1,000 ~ 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양돈 500 ~ 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